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1
----------	------

발의연월일 : 2025. 2.

발의의원 : 신동윤 의원,

전홍배 의원, 곽동환 의원

1. 제안이유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라고 한다.)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라.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2.1.18 일부개정 2022.7.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등 이스포츠 진흥사업 추진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경우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4조제1항제1호)
- 이스포츠 시설 구축 등은 내용이 광범위하여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
-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이스포츠 선수 등 육성 및 지원, 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신 동 윤 (☎ 2054)